



의안번호	제 2009 - 1 호
의 결 연 월 일	2009. 1. 20. (제14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총괄팀 제8차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회의 요지	1
II. 1팀 제21차 회의	2
1. 일시 · 장소	2
2. 참석자	2
3. 주요 안건	2
4. 회의 요지	3
가. 이주형, 김현석 전문위원의 횡령 · 배임범죄 양형기준 초안	3
나. 서보학 전문위원의 강도범죄 양형기준 초안	6
III. 2팀 제13차 회의	8
1. 일시 · 장소	8
2. 참석자	9
3. 주요 안건	9
4. 회의 요지	9
가. 최석윤 전문위원의 위증범죄 양형기준 초안	9
나. 이천현 전문위원의 무고범죄 양형기준 초안	11
다.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12



IV. 제14차 전체 회의	13
1. 일시·장소	13
2. 참석자	13
3. 주요 안건	13
4. 회의 요지	13
가. 이주형, 김현석 전문위원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초안	13
나. 서보학 전문위원의 강도범죄 양형기준 초안	19
다. 최석윤 전문위원의 위증범죄 양형기준 초안	19
라. 이천현 전문위원의 무고범죄 양형기준 초안	20
마.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21
V. 향후 일정	22

별첨	이주형, “횡령·배임 유형 양형기준 시안”
	김현석, “횡령·배임죄 양형기준 초안”
	“횡령·배임 양형기준안의 구체적 적용사례”
	길태기, “수정 횡령·배임 양형기준(안)”
	손철우,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주형, “김현석 전문위원의 별개 의견에 대한 의견”
	박영식, “횡령·배임죄 양형기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서보학, “강도죄 양형기준 초안”
	최석윤, “위증죄 양형기준 초안”
	이천현, “무고죄 양형기준 초안”
	총괄팀,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박형관, “전문위원 2009년도 연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I. 총괄팀 제8차 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8. 12. 23.(화) 14:45 ~ 16:0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2. 참석자(5명)

-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김현석, 조국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수립

4. 회의 요지

- 수석전문위원이 미리 배포된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에 따라 논의를 진행
-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수정하기로 하는 이외에는 위 연구계획안 내용과 같이 연구계획을 수립
 - ‘구체적 양형기준안 연구’(제1주제)의 연구 내용인 ‘경합범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는 범죄의 동종경합범과 전형적 관련성이 있는 경합범에 대해서만 경합범 처리 기준을 우선 마련하기로 함
 - ‘양형기준 매뉴얼 작성’(제2주제)은 양형기준 작성에 관여한 전문위원이 주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전문위원들은 검토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 ‘양형심리절차 개선 방안’(제4주제)의 연구 내용에 ‘양형심리방식

- 과 양형기준의 상호 관련성'을 추가하기로 함
- '가석방 실태분석'(제6주제)은 양형기준안 효과분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일정은 1팀에서 논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 '형사실체법 정비방안'(제7주제) 중 형벌 체계의 합리화 방안 및 특별법의 내용과 체계상의 문제점 등 원칙적인 내용은 2팀이 담당하되, 개별 특별법의 남용 및 법정형 불균형 현상 개선 방안, 형사실체법과 양형기준의 관계 분석 등은 양형기준을 담당하는 팀에서 분담하기로 함

II. 1팀 제21차 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1. 5.(월) 10:30 ~ 15:1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2. 참석자(6명)

- 김현석, 서보학, 이주형, 이호중, 진선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 강도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4. 회의 요지

가. 이주형, 김현석 전문위원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초안

(1) 유형분류 문제

(가) 기업범죄 유형의 별도 기준 설정

- 김현석 전문위원 초안에서는 기업횡령·배임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주형 전문위원 초안에서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유형분류
- 기업 횡령·배임범죄의 별도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대외적인 관심이 높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범죄에 대하여 그 특성을 살린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적된 문제점은 형량범위의 규범적 상향조정과 유형분류의 객관적 기준 제시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음
- 배임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형사절차가 민사적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기업범죄의 경중에 대한 신중한 분류가 요구됨

◇ 반대 ◇

- 피해금액이 큰 기업범죄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가 야기됨
- 반대로 기업범죄를 가중처벌할 경우에도 가중처벌의 근거가 부족할 수 있음
- 실제로는 사리추구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혼재된 범행이 많아서 그 구분이 불명확함

◇ 별개의견 ◇

- 일반범죄와 기업범죄에 동일한 유형분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기업범죄를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에 반대함
- 다만, 일반 횡령·배임의 50억 이상 구간(제4, 5유형)에서 가중적인 기업범죄 구간만을 두는 방안에는 찬성
- 기업범죄에서는 형량 기준보다 집행유예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별개의견 ◇

- 기업범죄를 피해금액만에 의해 분류할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형량이 권고될 우려가 있고, 검찰에 의해 수사 및 기소의 범위가 조절될 우려까지 있음
- 따라서, 기업범죄에 대하여 적합한 양형이 도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별개의견 ◇

- 피해금액만에 의해 유형 분류한 이주형 전문위원의 초안에서도 기업범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양형인자의 제시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나) 업무상 횡령·배임과 단순 횡령·배임의 처리

- 제시된 초안들에서는, 업무상 횡령·배임을 기본 범죄유형으로 보면서 단순 횡령·배임을 감경된 범죄유형으로 처리
 - 다만 김현석 전문위원은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를 일반 감경인자로 분류한 반면, 이주형 전문위원은 단순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기준점을 일률적으로 1개월 ~ 6개월 하향 조정하도록 함
-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빈도 수가 높은 업무상 횡령·배임을 기본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대 ◇

- 업무상 횡령·배임을 단순 횡령·배임에 비해 가중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형법 규정에 보다 충실함

(2) 형량범위 문제

- 이주형 전문위원 초안의 경우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 도출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3) 양형인자 문제

(가) 적극적 수사 협조

- 이주형 전문위원 초안에서는, '적극적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인자로 처리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특별감경인자로 '자수'와 '내부비리 고발'이 포함되어 있는 마당에 별도의 양형인자로 추가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거래 안전에 관한 사회적 신뢰 손상

- 이주형 전문위원 초안에서는, '거래 안전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하는 결과 발생'을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다액인 대부분의 사건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 ‘행위’ 인자와 ‘행위자/기타’ 인자의 구분

- 농아자나 심신미약도 행위 당시의 책임에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행위요소로 볼 수도 있는 등 ‘행위’ 인자와 ‘행위자/기타’ 인자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구분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행위적 요소를 행위자적 요소보다 중하게 고려하는 원칙은 책임주의에 비추어 보편적으로 승인될 수 있으므로 개별 인자의 속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4) 기타

- 제시된 초안들에서 벌금형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벌금형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벌금형 기준은 횡령·배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서보학 전문위원의 강도범죄 양형기준 초안

(1) 유형분류 문제

- 유형분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2) 형량범위 문제

- 상습·누범강도의 형량범위에 무기징역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초안상의 형량범위로도 통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실무상의 형량이 충분히 포섭될 뿐만 아니라, 특강(누범)에 해당되면 권고 형량이 가중되어 무기징역까지 선택 가능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3) 양형인자 문제

(가) 상해의 확정적 고의

-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상해의 확정적 고의를 가중인자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실무상 상해와 치상을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고, '중한 상해'가 이미 특별가중인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상해의 확정적 고의'를 인자로 추가할 경우 이중 평가의 우려가 있다는 근거에서 반대하는 데 다수 의견이 모아짐

(나) 흉기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서, '흉기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의 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초안에서 이미 '흉기를 단순 휴대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선정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한 경우와 흉기를 사용한 경우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가중인자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됨

(다) 중한 상해

- 강도죄에 있어 상해는 성범죄에 비해 넓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3주 정도의 상해도 '중한 상해'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3주 정도의 상해만으로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도죄와 성범죄 사이에 중한 상해의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데 다수 의견이 모아짐

(라) 상습·누범강도 인자

- 상습·누범강도의 경우 특수강도인 점을 일반가중인자로 처리하고 있기는 하나, 이와는 별도로 일반, 특수강도와 같이 '총기 사용'과 '5인 이상 공동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마) 소극가담

- 초안에서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은 특별감경인자로, '소극가담'은 일반감경인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두 개념을 포괄하는 특별감경인자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Ⅲ. 2팀 제13차 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09. 1. 6.(화) 14:10 ~ 16:05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2. 참석자(7명)

○ 김소영, 김용철, 박영식, 박형관, 손철우, 이천현, 최석윤 전문위원

3. 주요 안건

- 위증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 무고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4. 회의 요지

가. 최석윤 전문위원의 위증범죄 양형기준 초안

(1) 유형분류 문제

- 대체적으로 초안상의 유형분류가 적정하다는 데 다수 의견이 모아짐
 - 이에 대하여, 구성요건별로 추가적인 유형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위증 교사'와 '위증'을 별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형법 총칙에 따라 위증 교사범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됨

(2) 형량범위 문제

- 위증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에 기초하여 기본영역을 중심으로

형량범위의 상한만을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① 형량범위를 높일 경우 오히려 적정한 양형도출이 저해되어 집행유예 허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행유예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대신, 형량범위는 초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과, ②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도 법정형의 1/3 이하에 선고형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바, 중형주의에 의해서는 피고인의 재사회화가 아니라 탈사회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형을 대체하는 수단에 의한 교정 노력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 등이 제시됨

(3) 양형인자 문제

- 위증이 이루어진 사건의 중대성을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예컨대 민사사건의 경우에 소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4) 집행유예 기준 문제

- 참작사유 중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요증사실에 대한 위증'으로 변경함으로써 집행유예 결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요증사실의 개념이 모호하고 경우에 따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택하기 곤란하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됨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세분하여

주요 참작사유와 일반 참작사유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참작사유를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양형기준의 단순성이 훼손되고 양형기준이 너무 복잡해지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이천현 전문위원의 무고범죄 양형기준 초안

(1) 유형분류 문제

- 대체적으로 초안상의 유형분류가 적정하다는 데 다수 의견이 모아짐
- 무고의 정도나 피해 정도에 기초한 유형분류를 시도하였으나, 유의미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대하여,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별로 추가적인 유형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2) 양형인자 문제

(가)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는 빈도 수가 많지 않고,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고소를 반복하다가 결국 기소된 경우

- ‘고소를 반복하다가 결국 기소된 경우’를 가중인자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고소가 반복된 경우를 양형인자로 처리할 경우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양형에서 고려하는 결과가 되고, 부당한 고소가 반복되었다면 경합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됨

(3) 집행유예 기준 문제

(가) 중한 피해결과 야기

- '중한 피해결과 야기'는 명백한 결과불법적 요소로서 책임과 예방의 구분 취지에 반하므로,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진지한 반성 없음

- '자백 또는 반성'을 긍정적 참작사유로 채택하는 것은 무방하나, '자백하지 않는 경우'를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범행의 단순 부인을 제외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면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됨

(다)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해회복 노력 없는 경우'가 기본유형에 해당되므로,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 수석전문위원이 총괄팀 회의를 거친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을 설명
- 박형관 전문위원이 배포된 「전문위원 2009년도 연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발표

IV. 제14차 전체 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1. 12.(월) 14:25 ~ 20:2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9명)

-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김현석, 박영식, 박형관, 서보학, 이주형, 최석운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 강도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 위증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 무고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4. 회의 요지

가. 이주형, 김현석 전문위원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초안

(1) 유형분류 문제

(가) 기업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설정

- 김현석 전문위원이 기업범죄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함
- 기업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둘 것인지에 관하여 논

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찬성 ◇

- 기업범죄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견해
 - 자본주의의 기초를 뒤흔들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 횡령·배임 양형기준과 같이 금액을 토대로 형량범위를 정할 경우 기본적으로 금액이 큰 기업범죄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과 상관 없이 너무 과중한 형벌이 부과될 우려가 있음
 - 기업범죄에 있어서는 금액보다는 동기, 수법, 피해결과 등을 고려한 양형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위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제1기 양형위원회가 횡령·배임죄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 선정하 이유도 기업범죄 양형기준을 엄두에 둔 것임

◇ 반대 ◇

- 기업범죄 양형기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 횡령·배임한 금액이 200억 원 정도라고 할 때 기업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반면,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 등 기업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이는 불합리한 역차별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가능함(특히, 전문 경영진도 사주와 함께 엄벌에 처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대기업 관련 범죄임에도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업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업범죄 양형기준을 만드는 이상 그 적용대상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사회적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

- 구체적인 유형분류를 보더라도 제1유형으로 제시한 행위들은 실제로 무형의 결정도 많이 하는 유형들로서 적절한 유형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이에 대하여는 기업범죄 양형기준은 당연히 문제가 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답변

◆ 별개 의견 ◆

- 기업범죄 양형기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시된 양형기준안의 적정성에는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
 - 전문 경영진의 경우 연봉, 스톡옵션 등 자체가 이득에 해당하고 모든 행위가 어떤 식으로든 이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 외형상 제1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비이욕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예시된 기업범죄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가 적정한지 의문임
 - ☞ 이에 대하여는 이욕형, 비이욕형 등 단지 용어 선택의 문제일 뿐 실제로는 지적인 점을 고려하여 한 유형분류라고 답변
 - 비자금 조성이 사리사욕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시된 기업범죄 양형기준안에서 이를 비이욕형(제1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적정한지 의문임
 - ☞ 이에 대하여는 개인적 용도와 관련한 비자금 조성은 이욕형인 제2유형으로 별도 분류하였으며 비이욕형인 제1유형에 속하는 비자금 조성은 정식 회계처리를 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을 위한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변

◆ 별개 의견 ◆

- 기업범죄 양형기준의 궁극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정상 1기 양형위원회가 이를 마련하기는 무리이므로 2기 양형위원회 이후의 과제로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나) 1억 원 미만 구간의 추가 유형구분

- 1억 원 미만을 다시 유형구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다수의견 ◇

- 추가 유형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 1억 원 이상의 상위 유형이 1억 원 ~ 5억 원, 5억 원 ~ 50억 원 등 넓은 금액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억 원 미만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없음
 - 5,000만 원 미만과 그 이상 1억 원 미만 사이의 평균형량 차이가 2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굳이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다시 나눌 필요가 없음
 - 5,000만 원 미만과 그 이상 1억 원 미만을 구분하려다 보니 형량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 구간을 세분하게 되면 지역간 경제규모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피하기가 어렵게 됨
 - 양형기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1억 원 미만을 다시 유형구분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양형이 가능하다면 굳이 다시 유형구분할 필요가 없음
- 사기죄의 경우에는 보다 세분화된 양형기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횡령·배임죄의 경우에는 1억 원 미만을 세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견해도 제시

◇ 소수의견 ◇

- 추가 유형구분이 필요하다는 견해
 - 5,000만 원 미만 사건의 비중이 전체의 40%-50%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5,000만 원 미만과 그 이상 1억 원 미만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별개 유형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함

- 5억 원 이상의 유형분류는 특가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새로운 유형분류라고 할 수 없는데, 만일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지 않는다면 사실상 횡령·배임에 관해서는 유형화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 거의 없음
- 벌금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벌금형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에서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해 볼 만함

(다) 횡령·배임의 구분

-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한 성질의 범죄가 횡령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데 법적 평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됨

(2) 형량범위 문제

-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을 엄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50억 원 이상을 횡령·배임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형이 권고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3) 집행유예 기준 문제

(가) 집행유예 기준 설정 방식

- 이주형 전문위원은 집행유예 기준에 관하여 형량범위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 영역을 3단계로 구분한 안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은 방식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뉨

◇ 다수의견 ◇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한 집행유예 기준 설정 원칙은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

◇ 소수의견 ◇

- 아직 양형위원회에서 확정된 집행유예 기준 설정 원칙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도 허용된다는 견해

(나) 집행유예 참작사유

- 김현석 전문위원 초안에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집행유예 긍정 사유로 제시한 것은 2,000만 원 미만으로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답변
- 김현석 전문위원 초안에서 ‘범행수단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일괄하여 하나의 집행유예 고려요소로 묶은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성격별로 나누어 여러 개의 집행유예 고려요소로 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 고려요소에는 의사와 관련된 것, 수법과 관련된 것, 결과와 관련된 것, 피해회복과 관련된 것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수법과 관련된 요소만을 세분하여 여러 개의 요소로 취급할 경우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고 과다 평가가 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

- 김현석 전문위원 초안에서 집행유예 고려요소로 제시한 ‘오로지 기업경영 목적으로 한 행위일 경우’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김현석 전문위원 초안의 집행유예 기준 중 일견하여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서보학 전문위원의 강도범죄 양형기준 초안

(1) 유형분류 문제

- 유형분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2) 집행유예 기준 문제

- 일반참작사유로 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 사용’을 주요참작사유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오래 전의 동종전과 사실만으로 집행유예 결정 시 주요 부정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회 이상 동종 전과’를 ‘5년 이내’ 등과 같이 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 최석윤 전문위원의 위증범죄 양형기준 초안

(1) 유형분류 문제

- ‘위증 교사’와 ‘위증’을 구분한 다음 전자를 중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유형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이에 대하여, 형법 총칙상 교사범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

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확일적으로 교사범을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유형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다수 의견이 모아짐

(2) 양형인자 문제

- 양형인자 중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대부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증이 신빙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선정한 이상 별도 양형인자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소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반감경인자로 처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됨

(3) 집행유예 기준 문제

- ‘위증 경위에 대해 자백한 경우’를 집행유예 결정 시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신설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자수·자백’이 이미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념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위증 경위에 대해 자백한 경우’를 주요 참작사유로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됨

라. 이천현 전문위원의 무고범죄 양형기준 초안

- 유형분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마.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 수석전문위원이 총괄팀 회의를 거친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을 설명하고 토의 진행
-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수정하기로 하는 이외에는 위 연구계획안 내용과 같이 연구계획을 수립
 - ※ 의견이 나뉜 부분은 다수의견에 따라 계획 수립

(1) 집행유예 기준 및 경합범 처리 방식

- ‘구체적 양형기준안 연구’(제1주제)의 연구 내용인 대상범죄별 집행유예 기준 및 경합범 처리 방식에 관해서는 제1팀에서 ‘경합범 처리 방식’에 관한 총론적 연구를, 제2팀에서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총론적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함

(2) 양형심리절차 개선방안

- ‘양형심리절차 개선방안’(제4주제)의 연구 내용으로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에 대한 자료수집 방안’을 추가하기로 함

(3) 형사실체법 정비방안

- ‘형사실체법 정비방안’(제7주제)의 연구 내용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연구시기를 ‘4월 ~ 7월 중순’으로 하는 데 다수 의견이 모아짐
 -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검토된 형사실체법의 문제점 등을 양형기준 설정 연구를 담당할 1기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형사실체법 정비방안은 계속 과제로 선정

(4)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제8주제)의 연구시기를 계획안대로 '9월 ~ 10월 중순'으로 유지하는 데 다수 의견이 모아짐
-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선정은 2009. 7. 중순 위촉 예정인 2기 전문위원의 연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종전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

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15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14차 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2월 중순경에 개최하기로 함